



## < 수시 공시 >

2010.11.17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- 1) 신영마라톤분할적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- 2) 신영마라톤 증권 모투자신탁 F1호(주식)
- 3) 신영마라톤 증권 자투자신탁 F1호(주식)
- 4) 신영밸류인컴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

### 2. 공시 사유 : 모집합투자기구 규약 및 자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

### 3. 주요 변경 내용 : 자집합투자기구 신설로 인한 집합투자기구 구조 등 변경

### 4. 변경시행일 : 모집합투자기구(2010.11.18) / 자집합투자기구(2010.11.17)

### 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 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